

##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4
----------	------

제출년월일 : 2011. 12. .

제출자 : 충주시장

### 1. 제안이유

- 기업도시내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라 기업도시 조성부지 형태에 맞게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기업체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경계조정(주덕읍 화곡리, 가금면 용전리, 이류면 영평리본리)

- 주덕읍 화곡리 6필지 ( $62,752m^2$ )를 가금면 용전리에 편입
- 주덕읍 화곡리 8필지 ( $120,092m^2$ )를 이류면 영평리에 편입
- 가금면 용전리 5필지 ( $16,343m^2$ )를 주덕읍 화곡리에 편입
- 가금면 용전리 14필지 ( $184,300m^2$ )를 이류면 영평리에 편입
- 가금면 용전리 54필지 ( $236,992m^2$ )를 이류면 완오리에 편입
- 이류면 완오리 30필지 ( $284,389m^2$ )를 이류면 영평리에 편입
- 이류면 영평리 1필지 ( $40,962m^2$ )를 가금면 용전리에 편입
- 이류면 영평리 8필지 ( $294,642m^2$ )를 주덕읍 화곡리에 편입
- 이류면 본리 24필지 ( $102,008m^2$ )를 이류면 영평리에 편입

⇒ 주덕읍(증  $128,141m^2$ ), 가금면(감  $333,921m^2$ ), 이류면(증  $205,780m^2$ )

※ 알기쉬운 법령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

### 3. 참고사항

#### 가.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

#### 나.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합의 : 해당없음

#### 라.기타

- (1) 입법예고(2011.9.30~10.20)결과 : 별첨
- (2) 규제심사대상, 부폐영향평가 : 해당없음

##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별표 1]”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3]”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표 4]”를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 5]”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별표 6]”를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별표 9”를 “별표 9”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별표10”을 “별표 1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관할구역에 주덕읍 화곡리 일부지역과 이류면 영평리 일부지역을, 주덕읍 화곡리 관할구역에 가금면 용전리 일부지역과 이류면 영평리 일부지역을, 이류면 영평리 관할구역에 가금면 용전리 일부지역과 주덕읍 화곡리 일부지역과 이류면 완오리·본리 일부지역을, 이류면 완오리 관할구역에 가금면 용전리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14와 같이 편입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관할구역조정) ①충주시 교현동 관할구역에 연수동 일부지역을, 칠금동 관할구역에 교현동, 금능동, 연수동 일부지역을 <u>[별표 1]</u>과 같이 편입한다.</p> <p>② (생략)</p> <p>③충주시 주덕읍 관할구역에 신니면 일부지역을, 문화동 관할구역에 호암동 일부지역을 각각 <u>[별표 2]</u>와 같이 편입한다.</p> <p>④ (생략)</p> <p>⑤충주시 연수동 관할구역에 금능동 일부지역을 <u>[별표 3]</u>과 같이 편입한다.</p> <p>⑥ (생략)</p> <p>⑦충주시 주덕읍 관할구역에 신니면 일부지역을, 신니면 관할구역에 주덕읍 일부지역을 각각 <u>[별표 4]</u>와 같이 편입한다.</p> <p>⑧충주시 교현1동 관할구역에 성내동 일부지역을, 성내동 관할구역에 교현1동 일부지역을,</p>	<p>제1조(관할구역조정) ①----- ----- ----- ----- <u>별표 1</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별표 2</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별표 3</u>-----.</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 ----- ----- <u>별표 4</u>-----.</p> <p>⑧----- ----- -----</p>

현 행	개 정 안
봉방동 관할구역에 교현2동과 칠금동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5]와 같이 편입한다.	----- ----- ----- ----- --- <u>별표 5</u> ----- --- .
⑨충주시 노은면 관할구역에 가 금면 일부지역을, 지현동 관할 구역에 호암동 일부지역을, 호 암동 관할구역에 지현동 일부지 역을 각각 [별표 6]과 같이 편 입한다.	⑨----- ----- ----- ----- ----- ----- ----- <u>별표 6</u> ----- ----- .
⑩ · ⑪ (생 략)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충주시 연수동 관할구역에 교 현동과 안림동 일부지역을 <u>별표 9</u> 와 같이 편입한다.	⑫----- ----- ----- <u>별표 9</u> ----- ----- .
⑬충주시 안림동 관할구역에 교 현동과 연수동 일부지역을 <u>별표 10</u> 과 같이 편입한다.	⑬----- ----- ----- <u>별표 10</u> ----- ----- .
⑭ ~ ⑯ (생 략)	⑭ ~ ⑯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⑰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관할구 역에 주덕읍 화곡리 일부지역과 이류면 영평리 일부지역을, 주 덕읍 화곡리 관할구역에 가금면 용전리 일부지역과 이류면 영평

현 행	개 정 암
	<p>리 일부지역을, 이류면 영평리  <u>관할구역에 가금면 용전리 일부</u>  <u>지역과 주덕읍 화곡리 일부지역</u>  <u>과 이류면 완오리 · 본리 일부</u>  <u>지역을, 이류면 완오리 관할구</u>  <u>역에 가금면 용전리 일부지역</u>  <u>을, 각각 별표 14와 같이 편입</u>  <u>한다.</u></p>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 입법예고결과 의견 검토 결과

## □ 이류면민의 의견(기존 경계지역을 유지)

- 2004년 이류면 마치마을을 주덕읍으로 편입되었듯이, 또다시 금번 경계조정으로 이류면 땅을 주덕에 주게 됨으로써 정서적으로 용인이 어려우며, 면적 축소로 인하여 면세약화가 우려됨(주민반대 서명록 700명)

## □ (주)기업도시 의견(이류면민 의견을 일부 수용)

- 이류면민 주장대로 기존 경계구역을 유지한다면, 1개 공장에 2개 지번 부여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며, 또한 경계조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자연 될 시에 준공에 큰 차질이 예상됨
- 다만, 사업시행자로써 지역 주민과의 마찰 없이 사업시행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류면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류면 면적 축소 없이 행정구역 변경을 재신청

## □ 종합 검토결과

- 이류면민과 기업도시의 양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업도시 행정구역 변경 조정안으로 추진

### ※ 면별 증감면적

(단위 : m<sup>2</sup>)

구분	증 감		비고
	입법예고(안)	종합조정(안)	
주덕읍	증 388,114	증 128,141	
이류면	감 54,193	증 205,780	
가금면	감 333,921	감 333,921	